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22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2292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228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한도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9. 11. 21.

판결 선고 2020. 1. 16.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228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409,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3쪽 2행의 "F"을 "H"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이 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하5행의 "제10조"를 "제10조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소멸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멸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구상금채권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4509호의 청구 중 가수금채권과 달리, 가수금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위 가수금을 변제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종전 청구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구상금채권 역시 같은 이유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4쪽 15행 ~ 5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G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54)에 관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대표이사 G을 추가로 형사고소하고, 위 2016노2054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에 위 고소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처벌불원의사를 반복하였으며, G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로서 원고 대표이사인 G 개인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개인을 고소하고 원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위 고소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갑 제20, 21호증에 따르면, 위 민사소송에서 G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제9항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876)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161) 모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주체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도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성충용

판사최현중